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2. 27.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시공달 대상 업체

업체명	등록업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처분근거	처분내용
(주)명사기공	금속·창호·지붕·건축 물조립공사업 (김포-98-08-001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 (가좌동)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 제3호	영업정지 3개월 [2025.01.01.~ 2025.03.31.]

2. 공고기간 : 2024. 12. 27. ~ 2025. 1. 13.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고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 또는 온라인(<http://incheon.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로과(032-560-448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